

## The Fundamental Spirit of Education Law and Teacher-Librarian's Program

## 教育法의 基本精神과 司書教師의 問題

蘇時重

培材高校 司書教師

## 目 次

- I. 序論
- 1. 教育의 重要性
- 2. 法의 概念 및 解析
- II. 教育法
- 1. 教育法의 概要
- 2. 教育法의 基本精神
- III. 教育法 精神에 立脚한 司書教師의 問題
- IV. 結論

## I. 序論

## 1. 教育의 重要性

教育이라는 것은 “成熟한 사람이 아직 成熟하지 못한 사람에게 心身의 모든 性能을 發育시킬 目的으로 一定한 方法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동안 繼續하여 미치는 影響， 곧 被教育者の 知識， 理解， 態度를 기르고 生活을 發展시키며 人格을 形成하는 人間을 育成하는 人間의 育成過程이며。 또는 가르치어 기름， 가르치어 知識을 품”<sup>1)</sup> 등으로 規定되어 져 있다。

敎職者들은 第二世가 되는 學童들을 가르치고 指導한다고 하고 있다。學童들이 教育을 如何히 받느냐？하는 與否로서 그들의 將來가 測定되고 또한 社會의， 國家의 將來를 觀望할 수 있겠기에 教育이 重要한 것이고 또한 敎職者의 位置가 소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겠다。

옛날 공자님 말씀에 「有其母 有其子」(그 父母 밑에 그 子息이라는 말 즉 훌륭한 父母 밑에는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고 못된 父母 밑에는 못된 子息이 태어난다는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應用해서 「有其師 有其弟」(그 敎師 밑에 그 弟子， 即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弟子가 있다는 말)라는 말이 매우 적절한 말씀

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教師는 知識만을 傳達하는 機械的인 役割에서 脫皮하여 좀 더 深에 註眞된 姿勢를 傳達하는 姿勢가 必要하리라고 본다。원래 教育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그 真價는 몇십년 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可視的인 形態만을 보고 判斷한다거나 教育의in 일을 機械的으로 처리 한다는 것은 禁해야 할 일이다。

敎育은 一種의 精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精誠이 있을수록 教育은 成功의 될 것이요， 精誠이 없는 教育은 失敗 밖에 오지 않을까？

“有에서 有를 創造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고，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것이 教育이다”라는 말을 吟味하여 볼 때에 教育者는 어떠한 教育의 信條 即 哲學이 必要하겠고 現在狀態에 있는 우리 教育風土는 무엇인가？ 그 方向이 바꿔져야 되겠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教育의 重要性을 더욱 재삼 切感되어지리라고 생각된다。

## 2. 法의 概念 및 法 解析

法이란 社會生活의 秩序를 維持하고， 땊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配分 및 協力의 關係를 規律하기 爲하여 發達한 規範의 體系로서， 그 効力を 確保하기 爲한 社會的 強制의 뒷 바침을 가진 것이다<sup>2)</sup>라고 規定되어져 있다. 即 사람의 共同生活을 하는 計爲의 準則(叛逆의 基초되는 표준)， 國家에 依하여 强行되는 社會規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規範에는 存在(Sein); 意味로서 現實에서 自然的으로 必然的으로 되어지는 法則이 있고， 當爲(sollen); 意味로서 어떠한 價値나 目標를 為해서 存在하는 法이 있다。

法 解析의in 面을 생각하여 보면 有權解析과 學理解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有權解析에는 立法 中心의 立法解析， 判決文 中心의 司法解析， 主務長官이나 行政官廳中心의 行政解析 等으로 區分할 수 있겠고， 學理解析이란 一種의 無權解析인 學說과 같은 것인데

1) 이희승편. 국어대사전. 민중서판, 1971, p.305.

2) 學園社編. 世界百科大辭典. 학원사, 5v. p.666.

- (1) 文字中心, 文言中心의 言語의 意味의 文理解析과  
 (2) 字句에 拘束함이 없이 文脈의 意味를 爲主로 하는  
 論理解析 等으로 法 解析을 區分하여 볼 수 있다.

## II. 教育法

### 1. 教育法의 概要

教育法은 1949年 12月 31日 法律 第86號로 制定 公布되어 우리 나라 政治, 經濟, 社會, 모든 部門이 變遷發展되어 감에 따라 教育界 역시 뜻은 變貌를 가져왔다. 1973年 3月 10日字로 18次 改正을 하였다.

教育法의 構造는 總11章 177條로 되어져 있다.

- 1장——총칙
- 2장——교육위원회
- 3장——지방교육재정
- 4장——교원
- 5장——교육기관
- 6장——수업
- 7장——학과와 교과
- 8장——교과용 도서
- 9장——장학과 장학금
- 10장——별칙
- 11장——부칙 등의 내용이다.

### 2. 教育法의 基本精神

教育法의 基本精神을 教育法 内에서 찾아 본다면 總則이라고 하겠다.

總則은 教育의 基本方向을 提示한 것으로서 全文 14條로 構成되어 있는데 制定이래 한번도 改定함이 없이 그대로 存續하고 있고, 이 部門이 갖는 具體的인 法律的性格 또는 効果에는 果然 어떠한 意味를 갖느냐? 하는 問題는 뜻은 論議의 對象이 될 수 있다.

法體制에 있어서 古典的 表現 方法을 驅使한 形式的인 面을 떠나서 그 內容 自體를 吟味하여 보더라도 總則 14個 條文 全部가 極히 抽象的인 性格을 지닌데다 政策的인 要素, 다시 말하면 超法規的인 面을 多分히 지니고 있다.

教育의 基本精神에 對한 重點을 「弘益人間」에다 두는데, 「弘益人間」이라는 말은 三國遺事와 帝王韻記에 記錄되어 있는 말이라고 한다. 即 “上帝桓因의 庶子恒雄이 弘益人間할 생각으로 天符印 3個를 받고 太白山頂神檀樹下에 내려왔다」는 神話的 傳說에 由來하는 것이라고 한다.

弘益이라 함은 사람 서로가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의 幸福을 더하여 주는 自我犧牲的 奉仕精神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教育法은 이러한 弘益人間을 國民教育의 基本理念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弘益人間의 理念은 平和를 사랑하는 우리 民族의 相扶相助의 精神이고 治者와 被治者에 對한 牧民으로서의 政治龜鑑을 가르키는 뜻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이것이 哲學的으로나 科學的으로 무슨 學理의 體系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法律上 概念도 아니므로 實定性上으로는 아무 實益도 없는 語彙에 지나지 않는다.

## III. 教育法 精神에 立脚한 司書教師의 問題

教育法 精神에 立脚한 教育目的 中에는 “自主的 生活能力 또는 自活的人間의 育成”이라는 것이 重要하게 차지하고 있다. 教育에 있어서 “自主性”을 실려주는 일은 難이나 意義 있는 일이라 하겠다. 被教育者인 學生이 學習을 하는데 있어서도 被動的인 姿勢에서 能動的인 姿勢 即 自主的인 學習態度를 가지고 工夫하는 것이 바람직한 學生像이라고 하겠다.

教育者는 이러한 學生像을 만들어 내기에 努力해야 하겠고, 또 教育의 方法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即 在來의 教育方法인 教室에서 教師와 學生間에 行하여 지는 Face and Face의 方法, 教師는 가르치고 學生은 그 가르침만을 의지하고 배워지는 被動的姿勢에서 學生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려는 欲求와 興味를 가지고 스스로 찾아 보려고 애쓰는 학생을 배출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教育을 다른 測面에서 생각하여 보면 “教育은 學習을 指示하는 것이 아니라 學習을 促進시키는 것이며 이미 알려진 事實을 注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事實을 探求하는 것이며, 어린이들에게 學習動作을 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도록 도와주는 일이다”<sup>33)</sup>고 定義하는 분도 있다.

이러한 方向에서 볼 때 教育은 直接 Teaching하는 것도 重要하겠으나 그들 스스로가 배우고 알도록 Assist해주는 일이 또한 이에 뜻지 않게 重要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觀點에서 現在 圖書館 教育이 그에 該當하는 重要的部分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러한 點을 度外視하는 教育風土는 再考할 必要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되어 진다.

圖書館에서 일을 하는 司書教師, 또는 司書들은 自然히 認識에서나, 勤務條件에서나, 升給機會에서 이를 또한 그대로 放置만 해 둘 것인가 싶어진다.

앞으로의 發展을 爲해서는 모든 일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면

33) 최정훈 저. 『자각심리학』. 을유문화, 1972, p.19.

들을 為해서 國家의 部署가 있는 것이라는 보아진다.

現在 中等學校에서의 司書教師의 資格基準 및 進路를 살펴 보면, 一般教師가 圖書館教育을 받아서 司書教師를 兼하는 境遇와 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專攻해서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일을 보는 경우로 教育法에 依한 教員資格基準이 明示 되어져 있다. 생각하여 볼 일은

1) 司書教師가 實技教師라고 하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司書教師에 대해서 實技教師資格證을 주기도 한다) 어째서 司書教師를 實技教師라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實技教師라 함은 “中等學校에서 實業科, 藝能科, 保健科의 特殊한 技術指導를 담당하는 教師, 初級大學, 實業高等專門學校 또는 高等技術學校 卒業者로서 所定의 技能을 履修한 者 또는 實技考查 銓衡檢定에 合格한 者로서 實技教師 資格證을 받은 자”<sup>4)</sup>로 되어져 있다. 司書教師는 實業科, 藝能科, 保健科에 屬해 질 수도 없으며, 司書教師가 무슨 技術指導를 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는 司書教師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進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기도 하고 또 委格區分에서도 實技教師는 初級大學, 實業高等學校, 高等技術學校에서 한 分野의 技術만 익혀서 能達하면 되지만 司書教師는 모든 分野의 學問에 서 學的인 事項을 取扱, 도와주는 業務이다. 特히 參考業務(Reference)는 더욱 그러하다.

養護教師가 保健科에 屬한다는 말에는 同意할 수가 있겠다. 醫學의인 面과 看護의인 面에서 한 主題의 技術의인 것을 取扱하는 고로 實技教師라고 하는데 理解가 되나, 司書教師의 境遇 단지 教壇에서 直接 가르치지 않는다는 條件만으로 實技教師化 하는 것은 理解가 안되는 일이다. 司書教師 中에는 自己의 主題資格證에 따라 가르치는 教師도 있다. (또 根本的으 따지고 보면 實技教師를 一般教師와 等差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이다)

4) 教育학사전편찬위원회편. 教育학사전. 1965, p.515.

2) 司書教師는 級數가 없다는 일이다. 教員은 教育法에 明示되어져 있는 대로 資格級數가 있는 것이다. 準教師, 2級正教師, 1級正教師, 校監, 校長 順으로 昇進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司書教師에게는 實技教師 取扱을 해서인지 資格級數가 없다. 大學에서 둘 같이 教職科目과 專攻科目的 學點을 履修하고 一般教師와 何等의 缺點이 없는 데도 職級이 없고, 一般主題의 教師가 圖書館教育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司書教師가 되었을 경우, 進路가 막혀진 司書教師職에 있으려 하지 않는 것은 當然한 일이고, 教育大學院에서 碩士課程을 받는 사람이 何等의 理由없이 다른 一般主題 碩士들과 비교해서 資格의 길이 막힌다는 것은 理致上으로 안맞는 일이라고 본다.

이려한 非理한 일을 보고도 사람들은 直接 利害關係가 없으면 그냥 가만이 있다. —「힘 없는 자 의자다 말겠지.」

그러나 教育의 行政에 있어서나 教育界에서는 非理한 일이 있으면 合理로 마주해 놓는 正義의 行動, 奉仕가 必要하리라고 본다,

#### IV. 結論

教育法의 基本精神을 中心으로 한 몇 가지 面을 살펴보고 教育의 重要性과 現在의 教育風土에서의 教師의 重要性, 教育法의 精神, 教育制度에 있어서 非理되는 點이 있으면 合理되는 點으로 바꿔나갈 必要性 等을 살펴 봤다.

教育에서의 弘益人間, 人間完成, 自主的 生活能力, 公民的 資質 等이 重要하리라고 믿어진다. 特히 現時點에서의 教育은 「有其師, 有其弟」의 教訓에 따라 教師의 資質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거듭 強調하고 싶다. 또 自主的 學習態度를 기르기 為해서 圖書館의 重要性과 司書教師의 位置와 重要性을 거듭 強調하고 싶다.

#### ◎ 會費와 出版物 代金을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은 協會의 運營은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의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物代金 및 75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